

한국안광학회 – 이달의 학술논문 소개

*본 논문은 한국안광학회지 제25권 1호(2020년 3월 31일 발행) 게재 논문으로 저자는 학회의 동의하에 요약 발췌본을 제출하였습니다.

*논문의 판권은 한국안광학회에 있습니다.

안경사의 사회적 역할과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김상현, 심준범, 심현석(광주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서재명(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 **목적** : 본 연구에서 안경사와 관련된 법률들을 고찰하고, 법률상의 모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방법** : 안경사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들을 확인하고, 법률들의 모순점을 고찰하였다.

◆ **결과** :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는 국민의 안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하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법률의 해석으로 인해서 안경사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명확한 법률해석과 안경사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 **결론** :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안경사들에 대한 관련된 법률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안경사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 **주제어** : 안경사, 처방전, 굴절이상, 굴절검사, 의료기사

- 서론 -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 시력이상인 비율은 74.48%이고, 시력이상자 중에서 교정 중인 학생의 비율은 72.70%였다. 그리고 2019년 대한안경사협회의 안경착용률 검사 결과에 의하면 55.40%의 국민이 시력보정용구를 착용하고 있으며, ‘안경원에서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받는 성인의 평균값은 70.30%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안과 병·의원에 많은 안경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받는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경사에 의한 굴절검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은, 안경사는 시력보정용구와 굴절검사에 관하여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안경사는 안경사와 관련된 법적, 행정적인 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30년 전에 규정되어진 안경사 정의 및 업무 범위, 타 의료기사들은 받고 있는 용역에 대한 세금문제, 보건의료직공무원 지원에서 가산점, 의료보장구에 대한 지원 문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안경사와 관련된 법률들을 확인, 고찰하여 안경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확인하고, 모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상 및 방법 -

안경사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들을 확인하고 법률들에서의 모순점과 안경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재 정의하며, 의료기사들과의 차이점 및 기존에 발표된 안경사 관련 논문과 보고서 등을 고찰한다.

- 결과 및 고찰 -

현재 안경사의 정의, 업무범위,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련된 법률은 다양하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 기본법,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등이 있고, 의료법, 약사법,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직·간접적으로 안경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등에서는 안경사를 보건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안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써 수행하는 업무는 보건의료서비스이고, 안경사의 업무공간은 보건의료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제2조제1항 관련)를 정하고 있으며, 안경사는 의료기사와 달리 의사의 지도가 필요 없으며, 업무를 단독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것을 보여준다.

안경사가 시행하는 기본적인 검사는 굴절, 조절, 시기능검사 등이 있다. 안경사는 굴절검사를 통하여 시력보정용구인 안경의 조제, 휘팅 및 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질병분류목록(1권) (3차 정오표 2016.11.30.),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에 따르면 굴절이상은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사가 굴절과 관련된 검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수가 분류에 따른 E671, 굴절 및 조절검사 [안경처방전 교부 포함] Refraction Test, 항목에 의해

보험 의료급여를 제공받게 된다. 이와 같이 의사가 굴절 이상자들을 검사하면, 시력보정용구를 위한 안경처방전을 발행해야만 한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안경처방전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사례, 설명, 정의가 현재까지 없다.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첫 번째, 안과의사에 의해 발행된 안경처방전이 의료법에서 언급한 처방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가이다. 안경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지 않고 또한 의약품에는 기기·장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질병인 굴절 이상을 가진 굴절이상자를 교정하기 위해 의사가 발행한 안경처방전은 굴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한 시력보정용구에 대한 처방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보장구 처방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의료법에서 언급한 처방전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면, 안경사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안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가 아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자료와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6세 이하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시력보정용구를 조제, 판매 해야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법률사이 모순이 발생한다.

세 번째, 의사가 발행한 안경처방전이 의료법에서 언급한 처방전과는 다른 단순한 의뢰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라면, 안경사가 굴절검사를 다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6세 이하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시력보정용구를 조제, 판매 해야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6세 이상의 경우에는 약물을 사용하여 굴절검사와 시기능검사를 한 결과를 안경처방전에 기입하였다면, 안경사는

이 안경처방전을 거부할 수도 없고, 변형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의사가 발행한 안경처방전은 단순한 의뢰서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렵다.

현재 굴절이상과 시기능이상들은 질병으로 분류되어 질병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들이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의료수가가 책정되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가 굴절이상과 시기능이상자로 판단되면, 의료수가 항목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안경처방전을 발행해야만 한다. 그런데 안경사는 현행 법률상 의료인,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경처방전은 단순한 조제의뢰서나 처방전으로 해석하기에는 법률상 모순이 발생한다. 안경사는 의료기사처럼 의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약사법에 따르지도 않으며, 환자의 굴절이상도에 따라 조제된 시력보정용구는 의약품, 의료기기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한 법률적인 해석이 없는 상황이다.

안경사들은 현재 의료기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판례 2008구합22938 안경사안압검사-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 의하면 안경사의 안압측정행위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업무행위는 의료기사들이 행하는 업무지시과정과 매우 비슷하며, 이와 같은 업무행위를 많은 안경사들이 안과 병·의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의 역할도 포함하면서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는 직종이라고 볼 수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처방전에 의해 조제되는 것은 의약품만 해당되며 장비와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환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즉, 당뇨병환자들 중에서 제

1형 당뇨병 및 제2형 당뇨병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당뇨병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주사바늘...)가 포함된다. 그리고 틀니, 임플란트는 치과의사의 진단에 의해, 보청기와 같이 보장구에 대해서는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보장구들도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다. 굴절이상자들이 시력보정용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보정을 한다는 의미이지, 시력보정용구를 통하여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절력 감소에 의한 노년시의 경우에도 노화에 따른 조절력의 감소를 근거로 시력보정용구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효과를 준다. 하지만 굴절이상자들을 위한 시력보정용구는 틀니, 임플란트에 비하여 비용도 저렴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자들에게 때문에 요구도가 높은 근거리용 시력보정용구가 필요한 많은 노안환자가 존재할 텐데 이를 위한 건강보험에서의 지원도 없고, 굴절이상자들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시력보정용구는 식약청의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다.

연말정산항목에 일반적인 의료기기, 장애인 보장구,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비용이 의료비 공제항목에 들어있다. 왜 시력보정용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의료비항목에 포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라식, 라섹과 같은 굴절이상을 교정하는 수술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현재 라식, 라섹수술은 면세가 되었다. 형평성에 맞춘다면 당연히 시력보정용안경과 콘택트렌즈도 면세가 되어야만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장 영세와 면세 제2절 면세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하에 행하는 행위들도 수가가 정해져 있다. 단순한 치과보철물 조제의뢰서와 의사의 지도하에 행해지는 업무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주고 있는데, 안경사는 굴절이상자를 직접 검사하고 또는 의사의 안경처방전에 따라 조제, 핏팅, 판매된 시력보정용구에 대한 책임을 안경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안경사는 국민에게 안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안경사의 새로운 정의와,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통한 시력보정용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고민해야할 시기이다. 직접적인 의료급여의 지원이 힘들다면, 보장구의 정부지원 또는 면세와 같은 혜택이 요구된다.

—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안경사와 관련된 법률과 모순점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안경사의 정의가 새로 규정되어야 하며, 의사에 의해 발행되는 안경처방전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과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나와야 하고, 의료기사에 비하여 더욱 넓은 영역의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는 안경사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㉔

논문 원문보기 : 한국안광학회 홈페이지

<http://www.koos.or.kr> 또는 <https://koos.jams.or.kr>